

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각종대회 입상자 포상규정

제정	2016. 02. 11.
개정	2022. 04. 27.
개정	2024. 11. 05.

제1조(목적)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(이하 “본회”라 한다.) 이 규정은 국제 종합경기대회,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세종특별자치시 등록된 지도자, 선수에 대한 시상금 포상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국제종합경기대회” (이하 “국제대회”라 한다.)란 올림픽대회(동·하계), 아시아경기대회(동·하계), 세계선수권대회(종목별), 세계대학경기대회(동·하계)를 말한다.
2. “전국체육대회”란 전국체육대회(동, 하계)를 말한다.

제3조(지급대상 대회) 포상금이 지급되는 각종 대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전국체육대회(동·하계)
2. 올림픽대회(동·하계)
3. 아시아경기대회(동·하계)
4. 세계선수권대회(종목별)
5. 세계대학경기대회(동·하계)

제4조(포상금 지급대상) 각종대회 입상자 포상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세종시로 등록된 단체 선수, 지도자
2. 세종시를 연고로 하는 연고협약팀 선수, 지도자
3. 본회 회원종목단체 소속 선수, 지도자

제5조(포상금 지급기준) ① 각종대회 포상금 지급은 “별표 1, 2, 3호”와 같이 시행한다.

② 각종대회 포상은 제3조의 대회에서 상위 입상한 선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.

③ 종목별 2개 이상의 메달을 획득한 선수·지도자의 포상금은 별표 2와 같이 지급한다.<신설 2024. 11 .05.>

제6조(시상부문) 제3조 1호에 대한 시상대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시상한다.

1. 표창수여

[공 로 패]

- 종합 1, 2, 3위에 입상한 경기단체장
- 종합성적 성취단체 경기단체장

(전대회 대비 100%이상 향상 종목으로 총점 1,000점이상 단체)

[표 창 패]

- 종합 1, 2, 3위에 입상한 경기단체 전무이사
- 종합성적 성취단체 전무이사

(전대회 대비 100%이상 향상종목으로 총점 1,000점이상 단체)

[표창장] 입상선수 지도자

[특별표창] 특별히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

[감사장] 입상선수 소속단체장

[최우수선수상] 성적이 우수한 선수

[최우수지도자상] 성적이 우수한 지도자

2. 시상금 및 성과금은 「별표 1, 2, 3」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(보칙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포상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

부칙(2016. 2. 11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2. 4. 27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4. 11. 05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전국체육대회 시상금 내역표

(단위 : 원)

구분	시상금		
신 기록	세계 신 기록		5,000,000
	한국 신 기록		3,000,000
	대회 신 기록		1,000,000
연패기록	단체전	3연패 이상	20,000,000
	개인·단체전	3연패 이상	10,000,000
	개인	3연패 이상	5,000,000
입상지도자	1위		2,000,000
	2위		1,500,000
	3위		1,000,000
입상선수	1위		1,000,000
	2위		700,000
	3위		500,000

※ 대한체육회 당해년도 참가요강 세부종목 구분 기준에 따라 지급함.

[별표 2]

구분	포상금액(선수·지도자)			비고
	100%	75%	50%	
기준	첫 번째 메달	두 번째 메달	세 번째 이상	

[별표 3]

국제대회 포상금 기준

(단위 : 천원)

구 분	포 상 금 액(선수·지도자)			비 고
	금	은	동	
올림픽대회 (동,하계)	5,000	4,000	3,000	
아시아경기대회 (동,하계)	3,000	2,000	1,000	
세계선수권대회 (종목별)	3,000	2,000	1,000	
세계대학경기대회 (동,하계)	2,000	1,500	1,000	